

발의하셨으며 김성만 의원님께서 울산광역시 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원 발의한 바 있으며 김일용 의원님께서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 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축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하셨습니다.

또한, 중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주요 부의안건 및 활동 계획은 의원발의 안건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특히 오수·분뇨 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교육시설 연구단지 중구유치에 따른 건의안 채택 및 현장방문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영철 :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

정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의장직무대리 박영철 :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 의견을 상정합니다.

제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 24일부터 6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제20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99.6.24~6.29 (6일간)

일시	차수	부의안건	비고
개회식			
99.6.24(목) 11:00	1	1. 제2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 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20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 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 사위원회의의건	
99.6.25(금) 10:30		내무·건설환경위원회활동 (각종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활동)	
99.6.26(토) 10:30		상동	
99.6.27(일)		일요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9. 6.28(월) 10:30		내무·건설환경위원회 활동 (현장방문활동)	
99. 6.29(화) 11:00	2	1. 각종조례안 의결 2. 구청에 관한 질문의 건 (필요시)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

구의건 (임인도의원외 2인 발의)

(11시 10분)

○의장직무대리 박영철 :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 의견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경환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경환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의회운영 위원장 전경환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 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 회 회기중에 심사할 조례제·개정안 및 각 종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영철 : 전경환 의회운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제 20 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의장직무대리 박영철 : 의사일정 제3항 제 20 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19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김기환 의원, 임인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 임의건(의장제의)

(11시 12분)

○의장직무대리 박영철 : 의사일정 제4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울산광